

제 677 호

1978. 9. 11

발령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전 직 : 문화공보관 김인봉

전화 75-7834

인 계 :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전화 75-6090

# 시 보

## 차 례

### ◎ 규 칙

- 제 1773 호 :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 중개정  
규칙 ..... 3
- 제 1774 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중 개정규칙 ..... 4

### ◎ 고 시

- 제 461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지적승인 ..... 13
- 제 462 호 : 도시계획사업 ( 주차장 ) 시행허가 ..... 13
- 제 463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변경 ..... 15
- 제 464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실시계획인가일부변경 ..... 15
- 제 465 호 : 도시계획시설 ( 공원, 도로 ) 변경결정 ..... 16
- 제 466 호 : 도시계획사업 ( 주차장 ) 실시계획인가 ..... 17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467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18
제 468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적승인 .....	20
제 470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	20
제 471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적승인 .....	21
제 472 호 :	도시계획시설 ( 시장 ) 지적승인 .....	21
제 473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적승인 .....	22
제 475 호 :	도시계획시설 ( 여객자동차정류장 ) 지적승인 .....	22
제 477 호 :	도시계획시설 ( 유통업무설비 ) 결정및지적승인 .....	23

◎ 공 고

제 379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 .....	23
제 382 호 :	의료보호의원지정및취소공고 .....	24
제 384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실시계획공람공고 .....	25
제 385 호 :	공인실조사용승인공고 .....	26
제 386 호 :	시장 ( 백화점 ) 개설허가공고 .....	28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㉔

197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773 호

서울특별시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조례시행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17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  
고 제 3 항을 삭제한다.

②제 1 항의 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입 고지서는 별지 제 19 호 서  
식에 의한다.

제 19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  
고 동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①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시중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20 조 제 1 항 및 제 21 조 제 1 항

을 삭제하고 제 21 조 제 2 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②징수원이 징수한 일반 분뇨수거  
수수료는 수납당일 또는 익일  
12 : 00 시 까지 별지 제 23 호  
서식의 수입 보고서로 시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제 3 항중 '영업 및 다량쓰레기'를  
'쓰레기 수거 수수료'로 하고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 3 항 규정의 통지서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동장에게 송  
부하여 관계 수납부를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제 1 항중 '납기'를 '수납'으로 하  
고 '징수원의'를 삭제하며 제 2 항  
중 '영업 및 다량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쓰레기 수거 수수료'  
로 한다.

제 2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7 조 (징수보고) 구청장은 오물  
수거 수수료 징수상황을 월보로서  
매월 5 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  
여야 한다.

제 28 조 제 2 항중 '제 21 호의 2'를  
제 27 호 (감, 율, 별)'로 하고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분뇨

수거 수수료'로 한다.

1. 별지 제 18호 제 21호의 1, 2 제 26호 서식을 삭제하고 제 19호 서식중 '영업쓰레기 및 다량 수거 수수료 고지서'를 '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입 고지서'로 한다.
2. 별지 제 23호 서식중 '특별회계'를 삭제하고 별지 제 27호 서식(갑, 을, 병)중 '청소비 특별회계'를 삭제한다.
3. 제 19호 서식이면 오물수거 수수료 부과 기준표 하단 '주' 제 3호중 괄호 안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정오물은 년 2기, 영업오물은 년 4기, 다량오물은 매월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인사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197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774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5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3급 율류는 3년이상 다만, 선박직을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율종선장, 어선 율종선장, 율종 1등 항해사, 어선율종 1등항해사, 율종기관장, 율종 1등기관사, 율종선박통신사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분야 근무경력 5년이상, 율종 2등항해사, 어선율종 2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율종 2등기관사, 병종기관사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분야 근무경력 7년이상이어야 하고 의사를 보전소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3. 4급 잡류는 2년이상, 다만, 선박직을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율종 2등항해사, 어선율종 2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율종 2등기관사, 병종기관사, 병종선박통신사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분야 근무경력 5년이상이어야

<p>한다.</p> <p>(별표 4)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준 선박직렬난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동조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⑤영 제 17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제 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요건</p>	<p>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시범요구일전 3년 이내 졸업자로서 당해 시, 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 (중행이 단정하고 전체 졸업성적 순위가 5 할 이내 해당자) 을 받은자</li> <li>2. 임용 예정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교와 관련된 직렬이어야 한다.</li> <li>3.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li> </ol>
<p>출신 학교별</p>	<p>임용 예정직급</p>
<p>대학교 4년 졸업자</p> <p>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 졸업자</p> <p>실업고등학교 졸업자</p>	<p>4급갑류 또는 4급을류, 기능직 6등급 또는 7등급</p> <p>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기능직 7등급 또는 8등급</p> <p>5급을류 또는 기능직 9등급 이하</p>
<p>제 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37조의 2 (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 29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 및 별표 4의 2에 의한다.</p> <p>②영 제 29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p>	<p>렬의 구분은 별표 4의 5에 의한다.</p> <p>제 69조 제 1항 제 5호중 '55세' 를 '58세' 로 한다.</p> <p>(별표 7). 특별임용급률 상당 경력기준중 경찰직공무원의 임용예정급류를 다음과 같이 '경찰공무원' 과 '소방공무원' 으로 구분한다.</p>

임용 예 정 급 류 직 무 분 야	2급갑류	2급을류	3급갑류	3급을류	4급 갑류 기능직 6 동급 이상	4급 을류 기능직 7 동급	5급 갑류 기능직 8 동급	5급 을류 기능직 9 동급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제 37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영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 임용전에 받은 교육  
훈련기간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기간 포함) 은 경력  
평정 대상기간에 삽입할 수 있다.

제 93 조 제 1 항 제 1 호중 '새마을  
사업 유공 공무원 포상 계획에  
의한 포상' 다음에 '및 청백 봉사  
상 포상계획에 의한 표창' 삽입  
한다.

제 100 조 제 1 항중 '...이를 조정  
하여야 한다' 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호, 제 2 호  
및 제 6 호의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로 한다.  
(별표 4 의 5) 및 (별표 6) 과  
(별지 제 36 호의 2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포상가점) 제 93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 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별표 4)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중 선박직렬란

구분 직렬	3 급 이상	4 급	5 급
선 박 (선박분야 중 함해)	갑종선장, 어선갑종선장 갑종 1 등 및 2 등함해 사, 어선갑종 1 등 및	을종선장, 어선을종선 장, 을종 1 등함해사, 어선을종 1 등함해사,	을종 2 등함해사, 어 선을종 2 등함해사, 병종함해사, 소형

구분 직명	3 급 이 상	4 급	5 급
	2 등합격사, 율중선장, 어선 율중선장, 율중 1 등합격사, 어선 율중 1 등합격사, 율중 2 등합격사, 어선 율중 2 등합격사, 병중합격사	율중 2 등합격사, 어선 율중 2 등합격사, 병중합격사	선박합격사
선박 (선박분야 중 기관)	갑종기관장, 갑종 1 등기관장, 2 등기관장, 갑종선박통신사, 율중기관장, 율중 1 등기관사, 율중선박통신사, 율중 2 등기관사, 병중기관사	율중기관장, 율중 1 등기관사, 율중선박통신사, 율중 2 등기관사, 병중기관사, 병중선박통신사	율중 2 등기관사, 병중기관사, 소형선박기관사, 병중선박통신사
(별표 4의 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 및 기술직명 구분표			
기술직명		연구직명	
기계	기계	공업연구, 작업연구 (기계분야)	
건설	건설	" " (건설분야)	
선유	선유	공업연구 (선유분야)	
화학	화학	" " (화학분야)	
금속	금속	" " (금속분야)	
제조	제조	공업연구 (제조장분야)	

기술직명	연구직명
농림농촌지도 (농업분야)	농업연구 (농업분야)
"    (잡업분야)	농업연구 (잡업분야)
"    (임업분야)	농업연구 (임업분야)
축산농촌지도 (축산분야)	농업연구 (축산분야)
의 무 (일반의무분야)	보건연구 (의학분야)
약 무	보건연구 (약학분야)
보 전	보건연구 (공중보건분야)
수 산	농업연구 (수산분야)
토 목 (일반토목분야)	광업연구 (토목분야)
"    (농업토목분야)	농촌지도 (농업토목분야)
조 선	광업연구 (조선분야)

(별표 6)

임용 예정직명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군	직명	해당학과	비고
공업	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관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전기	전기, 전자, 원자	
	섬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화학	화학(공업화학, 분석화학)	
	조선	조선	
	금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관금용접	



계	구	직	명	해	당	학	과	비	고
		공업연구		기계, 전기, 전자, 화공(공업화학, 분석화학), 금속(금속공업), 요업, 섬유, 공업, 경영, 인쇄공업, 방직, 제지, 염색, 식품공업, 주물(주무형주조), 연초, 공업디자인, 도안					
광	무	채	광	광산, 자원개발, 지질					
		공업연구 (해당분야)		기계, 전기, 토목, 화공(공업화학, 분석화학), 광산, 금속(금속공업), 야금, 자원개발, 지질					
농	림	농	림 (해당분야)	농업, 임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목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촌지도 (해당분야)		농업, 임업, 잠업, 축산, 농업토목, 농촌지도, 원예, 제사, 목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생활지도		농가정, 식품영양, 식품가공, 가정공예					
		수	외	수외					
		축	산	축산					
		농업연구		농업원예, 농예연초, 목수재배, 농업경영					
		임업연구		임업					
		잠업연구		잠업, 제사					
		축산연구		축산					
		가축위생	연구	축산, 수외					
		농공연구		농업토목, 농산제도, 농기계, 식품가공, 농산가공, 농공					

직 군	직 별	해 당 학 과	비 고
선 박	선 박	기관, 항해, 통신 (해양제 학교에 한함) 해양기술	을중 2등항해사, 어 선을중 2등항해사, 어 선을중 2등항해사, 소행선 항해사, 을중 2등 항해사, 병종기관사 기관사, 병종기관사 소행선박기관사, 병종선박통신사 자격소지요함
	수 토	해양기술, 항해	
수 산	수 산	어업, 증식, 가공, 수산경영	
	수산연구	어업, 증식, 가공, 수산경영	
시 설	토 목	토목 (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 (건축설비)	
	진 축	건축 (건축설비)	
	지 적	토목 (토목건설)	지적기사 2급 (지적측량사) 지 적기능사 2급자 격증 소지자 요함
	거 상	기상	
	축 지	토목 (토목건설)	
통 신	통신사	통신 (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통신 (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	통신 (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	항 공	항공기전자, 통신전자, 기상판계	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판계사 항공통신사 자격 증 소지 요함
보 건	보건보건연구	위생, 임상병리, 보건	
	간 호	임상, 보건, 간호	간호원 자격증 소지요함
의 무	약 무	약품화학, 약제	

(별지 제 36호의 2 서식)					
<u>인사기록카드 요약서</u>					
(전면)					
소속					
직위		직명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본적					
주소					
학력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부터 까지				
경력	기간	부서 및 직위	담당사무	직급	발령처
	부터 까지				

32-12

제 677 호

시

보

1978. 9. 11

(후편)

임용 자 적 시 험	년 월 일	시 험 중 류		시 행 청
훈 련	기 간	중 류		훈 련 기 관
	부터 까지			
징 계 및 상 벌	년 월 일	중 류		시 행 청
3 급 특 승 용 사 단 장	년 월 일	시 험 명	판 정	시 행 청
기 록 상 황 확 인	본표의 기록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197 년 월 일 본 인 : 지명 (인)      증명 (인) 소속장 : (인)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61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고시제 439 호(78. 8. 3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제 41 호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적승인조서

(77. 3. 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중, 고등학교 (은평여자중, 고)	강남구 서초동 150-2 일대	29,752 (9,000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62 호

도시계획사업(수차장)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제 296 호(78. 6. 19)로 사실결정 및 지적승인되었으며 동공고제 351 호(78. 8. 18)로 도시계획사업 서류공람 및 의견청위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시행허가

하였거 도시계획법제 24조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77. 3. 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양재동 산 73-3 의 10 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주 차장) 시행허가(주)금성사주차장건설  
 다. 사업의규모 (면적) : 총 25,404㎡ (시행면적 22,423㎡,철거면적 2,981㎡)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282번지 수식회사 금성사 대표이사 박승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시행허가후 5일 이내  
 2) 준공예정년월일 : 1978년10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 의의 권리명세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자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강남양재	산73-2입	입	1241명중 159명	중구 양동 282	(주)금성사	-	-	
"	산73-3입	입	3440명중 3384명	상 동	상 동			
"	543 전	전	122명	경기시흥 파천 주안 18	김홍경	중구양동 282	주금성사	가동기
"	544전	전	180명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가동기
"	545-1입	입	33명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	545-2입	입	713명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	546-1전	전	129명중 125명	중구양동 282	주금성사	-	-	-
"	546-2전	전	551명	상 동	상 동	-	-	-
"	547-1전	전	593명중 341명	강남양재 526 용산갈월 69번108	노철안 이규진	중구양동 282	주금성사	가동기
"	547-2전	전	300명	중구양동 282	주금성사	-	-	
"	547-3전	전	375명	강남양재 526 용산갈월 69번108	노철안 이규진	중구양동 282	(주)금성사	가동기
계			7,685명중 6,783명					

◎서울특별시고시제 46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

- 1. 서울특별시고시 181 호 ('78. 4. 28) 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허가된 당시 도로계획사업(학교)시행을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고시제 41 호 ('77. 3. 16) 관한 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하였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 1 과와 성북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8. 9. 12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 가산 1 - 29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고려대 학교
- 3. 면적 및 규모: 12,059.93㎡ (3,655명)  
변경 사항: 위치 일부 변경
- 4. 시행지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안암동 5 가 1 번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 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78. 4. 25.

나. 준공예정일: '80. 5. 15.

6. 위치 및 계획 평면도: 별첨(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별첨(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 1 과와 성북구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464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인가 일부변경

- 1. 서울특별시고시제 171 호(78. 4. 22) 로 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인가된 신설제남국민학교 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일부변경하여 인가하였거 도시계획법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1 호(77. 3. 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9. 12

서울특별시장

- 가. 시설시행지: 영등포구 고척동 1 - 1 외 22 필지

나. 시설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학교) 국민학교신설

다. 시설 면적 : 5,466평(18,069㎡)

라. 시설규모변경사항 : 별첨설계도서와 같음

마. 시설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회교육감

바. 시설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1) 착수 예정일 : 시설 실시 계획인가 즉시

2)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별첨)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1조3항의 규정에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조서

의한 관계인의주소, 성명(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6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하던기 도시계획법제 12 조와 건설부고시제 41 호('77. 3. 16)에 의거 이를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도시경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9. 12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어린이공원	강남구 압구정동 333부락	(300평)	
변경	"	" 333외11	(300평)	위치변경



나.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 장	시	검	중	검	비 고
기정 변경	소로	2		8	160	압구정동 산 49-1		압구정동 114-1		폐지
기정 변경	"	2		8	100	압구정동 363 -3		압구정동 산 48-2		.
기정 변경	"	2		8	130	압구정동 113 -1		압구정동 84-3		.

별첨 도면표시와 살음 (도면생략)

④서울특별시고시제 466호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6호 (78. 1. 10) 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와 건설부고시제 41호 (77. 3. 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명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중구청도시정비과와 시

민용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세 한다.

1978. 9. 1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 위치: 중구 남산동 3가 5-10의 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 사업 (주차장)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992㎡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한국전력주식회사 김 영 준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 일로부터 - 10개월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생략

①서울특별시고시제 46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2조와

건설부 고시제 41호(77. 3. 16)의 권한위임 상황에 따라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9. 12

서울특별시장

로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 설	소로	2		8 m	230m	전농동 60-33	전농동 88-7	
"	"	2		8	310	" 35-1	" 59	
"	"	"		"	100	" 46-28	" 55-38	
"	"	"		"	210	" 60-22	" 55-9	
"	"	"		"	200	" 55-9	" 72	
"	"	"		"	400	면목동 212-9	면목동 95-29	
"	"	"		"	110	" 1274	" 1169	
"	"	"		"	100	" 1234	" 1240	
"	"	"		"	70	" 210	" 209	
"	"	"		"	360	" 369	" 107-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장	기점	중점	비고
신설	소로	2		8m	210 <sup>m</sup>	면목동 324	면목동 1186	
"	"	"		"	100 <sup>m</sup>	" 108-2	" 300-2	
"	"	"		"	200	" 1049-190	" 1049-159	
"	"	1		10	2,000	" 1049-41	장안동 237-2	
"	"	2		8	40	장안동 104-9	" 104-31	
"	"	"		"	55	" 131-2	" 131-3	
"	"	"		"	60	" 135-9	" 142-1	
"	"	"		10	50	" 138-8	" 153-10	
"	"	"		8	60	" 144-5	" 144-18	
"	"	"		"	70	" 167-2	" 167-19	
"	"	"		"	60	" 154-18	" 165-25	
"	"	"		"	80	" 216-11	" 218-5	
"	"	3		6	150	" 236-4	" 237-2	
"	"	1		10	140	" 145-2	" 147-14	
"	"	1		10	1,300	진관내동 104	진관내동 4	
"	"	1		10	1,400	진관외동 143	진관사	
"	"	2		8		" 373	진관외동 175	

<p>◎ 서울특별시고시제 468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7 호 (78.5.1)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p>	<p>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권한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	--

가.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내역

번호	구분	등급	류별	목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165	신설	중로	2	15	1,290	목동 294	신내동(대2-26)	

1978. 9. 13

서울특별시장

<p>◎ 서울특별시고시제 470 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p> <p>1. 서울특별시고시(변경) 78.5.26 건설부고시 제 77 호 (62.12.8)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p> <p>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p>	<p>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p> <p>3. 관계도서는 은평출장소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8. 9.</p> <p>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의위치: 구파발삼거리~삼송리 검문소간</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구파발삼거리~삼송리 검문소간 도로확장공사</p>
--	--

<p>3. 사업규모 : 서울지구간 B = 20-35 m L = 1,100 m 경기도구간 B = 18-27 m L = 1,500 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p> <p>5. 착수및준공예정일 : 일 가 일 ~ 1978.12.31</p> <p>6. 사용또는수용할재산의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지조사 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471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8.9.13 서울특별시</p>
---	--

도시계획가로조사

구분	등급	류별	목원	연장	기 점	중 점	주경과지	비 고
신설	중토	3	12	225	내발산동436-2	내발산동산58임		학 교 건업로

<p>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472 호</p> <p>도시계획시설(시장)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450호(78.9.4)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41</p>	<p>호(77.3.16)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철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8.9.13 서울특별시</p>

가.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조서

구분	시장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성내시장	강남구 성내동 25-1+2-3	2,390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7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조(77.3.16)의 권한 위인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케함.

1978.9.14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6M	100M	예관동22의1	예관동130의2	청사용지저속 계획선폐지 위 폐지노선대치
"	"	"		6M	30M	예관동123	예관동 55의6	
폐지	"	"		6M	70M	예관동96의4	예관동122의5	
신설	"	"		6M	90M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75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57호(78.9.6)로 결정 고시된 도봉구관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78.3.16)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9.14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도봉구 상계동 110-8과 2필지	1,400㎡ (420평)	봉안운수
"	"	도봉구 우이동 8-10	1,924㎡ (583평)	삼화교통
<p>별첨 도면표시와 같음.</p> <p>◎ 서울특별시고시제 477 호</p> <p>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p> <p>1. 당시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3.14 )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78.9.14 서울특별시</p> <p>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p>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유통업무설비	영등포구구로동 604 일대	61,810㎡	
<p>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40px;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 padding: 5px;">공 고</div> <p>◎ 서울특별시공고제 379 호</p> <p>관저계획일부변경인가및관저 예정지변경지정공고</p> <p>1. 압사, 영등토지 구획정리 사업지</p> <p>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342 호 ( 78.8.8 )로 공람공고 한 바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제</p>				

<p>회율 일부 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에정지를 일부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 한다.</p> <p>2. 환지에정지가 변경 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공고일로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 한다.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완료 및 다른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하게 된다.</p> <p>3.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8. 9 서울특별시, 장</p>	<p>( 환지에정지변경지정내역 )</p> <p>1. 사업명 : 암사,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p> <p>2. 변경위치 : 암사동 463의 2 호의 52 필지</p> <p>3. 변경면적 : 2,871.80평 → 2,433.20 평</p> <p>◎ 서울특별시공고제 38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의료보호의원지정및취소공고</p> <p>생활보호 대상자의 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추가지정하고 일부 기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하였기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7 조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함.</p> <p style="text-align: right;">1978.9.14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p>
---	---

가. 의료기관신규지정

진료지구명	진 료 대 상 지 역	1 차 진 료 기 관	
		의료기관명칭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전지역성병환자진료 서울특별시전지역성병환자진료 동대문구 : 장안동, 전농 3 동, 답십리 2,4 동 영등포구 : 고척동, 개봉 1,2 동 관악구 : 신대방 1 동, 신림 3,4,7 동 강서구 : 전지역 (염창동의 15 개동) 의 이비인후과 환자	한성 의원 신동아의원 광세 의원 성노사의원 누가의원 화곡이비인후과	중로구종로 4 가 5 성북구중암동 3 의 597 동대문구장안동 111 의 10 영등포구고척동 50 의 52 관악구신대방동 655 의 3 강서구화곡동 105 의 64



2. 의료보호의원지정위치			
의료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제설자)	비고
협동의원	중구양동 601	이문백	
고려소아과의원	성동구농동 256 의 1	김세곤	
유의원	강남구천호동 406 의 3	유인수	
베드루의원	강남구압사아파트상가 203	정금주	

<p>② 서울특별시 공고 제 384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 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3 호(78.7.27) 및 제 415 호(78.8.17)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불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2. 관계 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8.9.13</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장</p>	<p>1. 사업시행지: 강서구 신정동 722, 857, 723, 726, 727, 728, 729, 730, 730-3, -5, -6, -7, -8, -4, 733-4, 734-2, 855, 858, 산 111-2, -3, 산 112, 산 115-4, 산 116-1, -2, 산 117.</p> <p>2.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금육여자중고등학교</p> <p>3.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1-24 학교법인 금육학원 이사장 백금육</p> <p>4. 사업시행면적: 32,842㎡(9,935평)</p> <p>5. 사업시행기간: 78.9 - 79.12.31</p> <p>6. 공람기간: 78.9.13 - 78.9.26 (14일간)</p> <p>7.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 제출 또는 문의 바람. (602-9553)</p>
--	---

◎ 서울특별시공고제 385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 사용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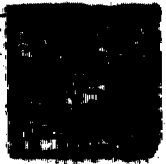
1978.9.15

서울특별시장

1. 사용개시일자 : 1978.9.15

2. 인 영

직 인 구 분	인 영
직업훈련촉진기금 서울특별시출납명령관	별첨
" 출납공무원	"
" 물품관리관	"
" 물품출납공무원	"
" 채권관리관	"

인 영		인 영	
부 영	서울특별시출납명령판	공 영	서울특별시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부 영	서울특별시출납공무원	공 영	서울특별시채권관리관
인 영			
부 영	서울특별시물품관리관		

◎서울특별시 공고제 386 호

시장(백화점)개설허가공고

다음과 같이 백화점을 개설허가하였기 시장법 제9조에 의거 공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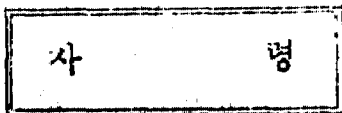
다 음

- 1. 백화점명 : 미도파 백화점 청량리점
- 2. 개설자 : 주식회사 미도파 백화점 대표 임정규
- 3.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71  
(건경 : 3,838.25평 점포수 : 149개)

4. 개설허가일 : 78.9.12

1978.9. .

서울특별시 장



◎ 1978.9.1

공무원교육원 유중호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근무할 임함.

예산담당관 신현석  
서기관

교통기획담당관 직무대리에 보함.

지방행정서기 이재영

지방행정서기 용봉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진출을 명함.

◎ 1978.9.4

공무원교육원 박종실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서기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취락구조 개선 추진연장지도관)

◎ 1978.9.7

남서울대공원 건설본부 전만진  
지방행정사무관 (관리과장직대)

지방서기관에 임함.

남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에 보함.

민방위국 행정사무관 손장호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방위국장에 보함

민방위국 행정사무관 박정길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방위국장에 보함

<p>민 방 위 국 행정 사무관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방위 국장에 보함. 민 방 위 국 행정 사무관 윤 두 명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방위 국장에 보함</p> <p>◎ 1978.9.1. 중 구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 수사보에 임함. 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p> <p>◎ 1978.9.9 주택정비과장 서 기 관 원외의하여 그직을 면함.</p>	<p>◎ 1978.9.10 전 회 상 지방건축기과 시보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p> <p>◎ 1978.9.11 성 북 구 지방행정 수사보 권 우 백 대법원 산결 확정 (사건 77구 251 78.5.2)에 의 하여 75.10.22자 파면 처분을 등남자로 취소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p>
--	---

성 명	발 명 사 랑	현 부 서
이 의 만	새 중 문화 회 관 7 호 봉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총 무 과
강 상 순	시 민 과 7 호 봉 "	시 민 과
정 명 섭	중 부 건설 사 업 소 9 호 봉 "	건 설 행 정 과
최 락 호	차 량 등 록 사 업 소 9 호 봉 "	서 글 문 동 장
김 시 건	" 7 호 봉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조 한 승	중 로 구 14 호 봉 "	중 로 구
박 문 구	성 동 구 8 호 봉 "	성 동 구
박 석 백	" 9 호 봉 "	"

성 명	발 명 사 항	원 부 서
도영화	도봉구 보건소 7호봉 지방행정서기보시보	도 봉 구
함경일	용 산 구 8호봉	용 산 구
김창선	강 남 구 10호봉	강 남 구
이연우	서 대 문 구 9호봉	서 대 문 구
이상기	영 등 포 구 8호봉	영 등 포 구
적병학	" 10호봉	"
이동진	" 15호봉	"
손홍행	중 로 구 7호봉	중 로 구 (5년간동근무자)
이 익	" 8호봉	"
이성희	" 7호봉	"
김민환	중 구 6호봉	중 구 (5년간동근무자)
송용면	" 5호봉	"
송동철	동 대 문 구 11호봉	동 대 문 구 (5년간동근무자)
김노원	" 5호봉	"
이성숙	성 동 구 6호봉	성 동 구 (5년간동근무자)
노포봉	" 10호봉	"
김현광	" "	"
심성진	성 북 구 4호봉	성 북 구 (5년간동근무자)
오성호	" 3호봉	"
박충부	" 5호봉	"
문진국	도 봉 구 12호봉	도 봉 구 (5년간동근무자)
강영도	" 9호봉	"
서석한	" 7호봉	"
김 철	" 9호봉	"
박해세	" 11호봉	"
이명화	" 3호봉	"

성명	발명사항	원부서
이양숙	마포구 3호봉 지방행정서기보시보	마포구 (5년간동근무자)
권영숙	" 5호봉 "	"
황문성	용산구 9호봉 "	용산구 (5년간동근무자)
점정숙	" 5호봉 "	"
주경자	" 8호봉 "	"
양기진	" 6호봉 "	"
내정자	영등포구 8호봉 "	영등포구 (5년간동근무자)
김팔영	" 9호봉 "	"
김해연	" 2호봉 "	"
노태정	" 7호봉 "	"
권희달	" 6호봉 "	"
김홍근	" 4호봉 "	"
강대임	관악구 5호봉 "	관악구 (5년간동근무자)
진형화	" 3호봉 "	"
윤석진	" 8호봉 "	"
최락영	강서구 6호봉 "	강서구 (5년간동근무자)
이종만	은평술장소 14호봉 "	은평술장소 (5년간동근무자)
황영무	" 8호봉 "	"
김동문	" 8호봉 "	"
손창평	" 6호봉 "	"
양시권	" 6호봉 "	"
최승분	천호술장소 12호봉 "	천호술장소 (5년간동근무자)
정용권	" 8호봉 "	"
김종남	" 6호봉 "	"

1978.9.11

서울특별시

<p>◎ 1978.9.11  관악구 김도식  행정주사보  총무처 전출을 명함.</p> <p>◎ 1978.9.12  급수과 이기호  지방토목기사  급수과 누수방지계장 직무  대리할 명함.</p> <p>◎ 1978.9.13  도봉구 장순기  시립봉사실장  원액 외하며 그직을 면함.</p>	<p>◎ 1978.9.15  경북담성군 하성훈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시정 개발담당관실 근무할  명함.</p> <p>부산시 남구 안명환  지방행정서기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주택건설사업소 근무할  명함.</p>
---	--